

2021년 성평등 정책 & 성폭력 예방 정책 논의 제안서

1. 논의 필요성

- 제7차 사법행정자문위(2020. 6. 11)에서 성평등 관련 안건 논의 이후, 2020년 한 해동안 대법원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내용 공유와 평가를 통해 제도적 장치보완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가 필요함.

※ 참고 : 제7차 사법행정자문위원회 ‘성평등 정책 및 성폭력 예방 정책’ 논의 및 결정사항

- 의장(대법원장)의 성평등 주제에 대한 사법부 최고책임자로서 의지표명과 법원행정처의 최근 2년동안의 성인지 통계 및 예산관련 발표에 이어 위원들의 자료검토 및 논의(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정립연구 필요, 2018년 봄 법원행정처가 성폭력 전수조사 이후 진행 과정 중간점검 필요 등).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 내에 성평등 관련 분과위원회 개설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부결되고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 받기로 함.

- 결정사항(공식 회의록 내용-별첨자료①) : “법원행정처가 젠더법연구회와 협력하여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사법부가 해 왔던 노력을 점검하고 그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확인한 뒤, 지속 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”.

- 성평등의 가치는 헌법이 보장하고, 「양성평등기본법」과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음.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엔위민(WOMEN), 여성지위위원회(CSW), 여성차별철폐위원회(CEDAW)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.
-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8개 부처(교육부· 법무부· 문화체육관광부· 보건복지부· 고용노동부· 국방부· 경찰청· 대검찰청)에 ‘양성평등정책담당관’ 제도를 두고, 양성평등담당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점검하고 있음. 2021년 1월 27일에도 <부처별 ‘20년 주요 성과 및 ‘21년 중점추진과제 계획>을 논의하였음.
- 성평등한 사법행정 및 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인권감수성에 기반한 법원문화를 위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.

2. 성평등 논의 위한 자료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 회신자료(* 별첨자료 ② ③ 참조)

I. 대법원이 2020년 한 해 동안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진행해온 사업내용 및 평가

- (1) 전국 법원(지원 포함) 양성평등지원관 선정
- (2) 온라인 신고센터,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
- (3)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등(2020. 8.)
- (4) 양성평등 상담위원 제도 활성화
- (5) 「법원행정처 성희롱·성폭력 및 성차별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」 개정(2020. 6. 12.)
- (6) 2020년 양성평등지원관(법관) 워크숍 개최(2020. 6. 26.)
- (7) 성평등 제고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정책실행 TF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

II. 관련 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

- (1) 사법부의 심의, 조정, 자문, 징계 등 모든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(2018~2020)
- (2) 사법부의 성 비위(성희롱, 성폭력, 성매매,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영상물 관련 신고 및 감사 건수/사유/권고 및 실제 징계 통계 (2018~2020)
- (3) 성인지 예산 분석 및 성별영향평가 현황 및 개선 조치 현황 (2018~2020)
- (4) 육아휴직 참여 성별 비율 (2018~2020)

III. 젠더법연구회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및 활동 경과 정리

- (1) 『젠더와 법, 그리고 법원』 법관연수 개최
- (2) 2017-2019 젠더판례 다시읽기 자료집 발간 및 발표
- (3) 『성범죄재판, 함께 돌아보기』 온라인 포럼 및 자료집 발간
- (4) ‘모진만남’ 웹진 2~7호 발간
- (5) 젠더판례백선 발간 준비
- (6) 사법정책연구원 2021년도 기본연구과제 제안 및 선정
- (7) 해외사법소식 수집 및 공지
- (8) 맞춤형 성인지 교육 실시
- (9) 양성평등 실현 - 스마트워크제 확대 논의
- (10) 기타 활동

3. 논의 사항

- (1) 2020년 한 해동안 대법원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진행해 온 사업내용 공유 및 평가.
- (2) 이후 보완되어야 할 정책내용 및 추진방향 등 논의
(예: 중·장기 계획수립, 균형인사, 성인지예산 활성화, 홍보, 아카이빙 등)
- (3) 성평등한 법원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법행정자문위원회의 역할 논의

< 참고자료 >

■ 양성평등기본법(법률 제16623호)

제5조(국가 등의 책무)

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.

제14조(성 주류화 조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·개정 및 적용·해석, 정책의 기획, 예산 편성 및 집행,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5조(성별영향평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법령(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조례·규칙을 말한다)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성별영향평가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제16조(성인지 예산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(性認知)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7조(성인지 통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(人的)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(이하 이 조에서 "성인지 통계"라 한다)를 산출하고,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.

제18조(성인지 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, 정책,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(이하 "성인지 교육"이라 한다)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.

제20조(적극적 조치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... 등

■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(CEDAW) :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- 대한민국의 제8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(2018. 3. 9)

D.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 중

11. 위원회는 지난 권고를 재차 반복하며, 당사자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장한다.

(a) 정부 및 법집행 공무원, 검찰,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본 최종견해와 협약, 선택의정서 및 위원회 일반권고의 배포를 보장할 것.

< 별첨자료 >

1.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제7차 회의록(2020. 6. 11)
2. 법원행정처,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(2021. 4. 26)
3. 대법원-젠더법연구회,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 및 활동 경과 정리(2021. 4. 26)